

중국의 에너지/자원 법제 및 사례 검토

- 외상투자 중국 광산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-

손금란 변호사

■ 중국 광산자원 개발 관련 개요

- 향후 5년간 중국 경제발전의 청사진이자 주요 발전지표로 볼 수 있는 12.5 규획에 따르면, 중국의 광산자원 개발은 경제발전의 패러다임 전환과 환경보호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, 경제의 외향적 성장 대신 질적 발전으로 추구하고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,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을 그 전반적인 취지로 함
-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과 환경보호는 산업구조 조정과 직접 연관되는 바, “高투자, 高오염, 高소모”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일부 광산 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도태 전략을 펼치고 구조조정, M&A 등을 통하여 Infra 구축, 에너지 절감/배출감축 등 산업구조의 통합과 업그레이드를 이루는 반면 신홍 광산 산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시범생산, R&D 개발 및 상업화를 추진하고 일부 가시적 성과를 취득하였음
- 대표적으로 이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신홍 광산 산업의 예로 MTO(Methanol to Olefins), CTL(Coal to Liquid) 위주의 신홍 석탄화학과 천연가스 사업에서의 CBM(Coal Bed Methane), SNG(Synthetic Natural Gas), Shale Gas을 들 수 있음. 한편, 12.5 규획의 자연환경 분야 8개 지표 중 7개는 구속성 지표로 설정되었는데 그중 비화석에너지의 1차 에너지 비중 지표가 구속성 지표로 신설된 것은 향후 중국정부가 풍력, 태양, 수력, 원자력 등 신에너지에 대한 지원

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어 신에너지 산업이 고속 발전할 것으로 보임

- 「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」에 따르면 외국투자자는 외상독자, 중외합자 또는 중외합자의 방식으로 중국 광산 자원의 개발에 참여할 수 있지만, 기반산업과 전략산업과 관련된 자원개발에서는 외국투자자의 진입이 금지되어 있음
- 한편, 외국투자자의 광산자원의 탐사 또는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탐사권 또는 채굴권의 인허가를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통제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바, 현재 중국정부는 막강한 기술과 자금력 및 해외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메이저 Player들을 상대로 매우 제한적으로 지분참여를 허락하고 있으며 향후 광산자원 개발에서 외자진입조건이 더욱 까다로워 질 전망이다
- 외국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산업정책과 국제시장의 변화 등을 근거로 목표시장을 분석하여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. 또한 중국 자원개발 산업을 통제하고 있는 3대 자원개발 기업인 CNPC, SINOPEC, CNOOC과의 협력과 지방정부의 지원도 불가피하며 물류업체(철도), 기술업체(R&D 기관, 시공업체) 등과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가지는 것도 바람직함

■ 중국 광산자원 개발 관련 주요 법률이슈

- 광산자원의 탐사 또는 채굴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토자원부서에 탐사권 / 채굴권을 별도로 신청(채굴권을 취득한 광산기업이 비준받은 광산구역에서 탐사업무를 할 때는 별도로 탐사권을 취득할 필요 없음)하여 취득하여야 함
- 탐사권 / 채굴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통칭 광물권이라고도 함. 광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지만 탐사권 / 채굴권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이 국토자원부서에 직접 신청하거나 또는 국토자원부서에서 주관하는 입찰, 경매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유상 취득할 수 있으며 제3자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양도받아 취득할 수도 있음

- 국가는 광물권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데, 정부가 출자(탐사비용, 광산자원보상비용, 각종 경비 등을 제공)하여 탐사하는 경우에도 당해 정부당국이 지정한 법인 또는 개인이 광물권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됨
- 탐사권자 / 채굴권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음

구분	권리·의무
탐사권자	<p><u>권리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준받은 탐사구역과 탐사기간 이내에 광산 자원에 대한 탐사업무를 할 수 있음 - 탐사구역 및 인접구역에 물·전기·통신 파이프를 설치할 수 있되 이미 설치된 물·전기·통신 파이프에 영향을 미치거나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됨 - 탐사구역 및 인접구역에서 통행할 수 있음 - 공정의 필요에 따라 토지를 임시 사용할 수 있음 - 탐측구역 내 신규 발견된 광산의 탐사권을 우선 취득할 수 있음 - 탐사구역 내 신규 발견된 광산 채굴권을 우선 취득할 수 있음 탐사권자의 동의 없이는 당해 탐사구역에서의 여하한 제3자가 탐사권 / 채굴권을 신청할 수 없음 - 탐사과정에서 비준받은 공정설계에 따라 시공·회수한 광산품을 자체적으로 판매할 수 있음(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인수하는 광산 제품 제외) <p><u>의무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탐사권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시공을 개시하여야 하고 탐사권증상 규정된 기간 이내 탐사업무를 완료하여야 함 - 주관 국토자원부서에 업무 개시 능 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- 탐사공정설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고 함부로 채굴하여서는 아니됨 - 주요 광산을 탐사하는 동시에 공생 / 반생 광산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탐사·평가하여야 함 - 광산자원탐사보고를 작성하여 주관 국토자원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함 - 관련 규정에 따라 광산자원 탐사 성과 관련 자료 취합 및 보고하여야 함 - 노동안전, 토지 개간, 환경보호 관련 규정의 준수하여야 함 - 탐사 종료 후 잔여 광갱을 적시에 매립하여야 함

채 굴 권 자	<p><u>권리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준받은 채굴 범위와 기간 이내 채굴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- 광산 제품을 자체적으로 판매(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인수하는 광산 제품 제외)할 수 있음 - 광산 구역 내에서 생산 및 생활 필수 시설을 구축할 수 있음 - 생산의 필요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음 <p><u>의무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준받은 기간 이내에 광산건설 또는 채굴 업무를 하여야 함 - 광산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채굴하고 종합적으로 이용하여야 함 - 자원세 및 광산자원 보상비용 납부하여야 함 - 노동안전, 토지개간, 환경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- 국토자원부서의 감독관리에 따라 광산 저장량 및 광산자원 개발이용 관련 통계보고서 작성하여야 함
------------------	--

- 탐사권 / 채굴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허가 및 등기제도를 실시함

구분	탐사권	채굴권	비고
등 기 구 역 의 사 전 승 인 여 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등지구역 관련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직접 탐사권 신청 가능 - 탐사권 등지구역은 경위도 1'×1'을 기준 등지구역으로 하고 각 탐사 프로젝트 등지구역의 최대 범위는 다음과 같음 ✓ 광천수: 10개 기준 등지구역 ✓ 금속광산·비금속광산·망사성 광산 : 40개 기준 등지구역 ✓ 지열·석탄·물 및 가스 광산 : 200개 기준 등지구역 ✓ 석유, 천연가스 광산 : 2500개 기준 등지구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등지구역의 사전신청을 받아야 함 - 등지구역을 승인받은 날로부터 광산 규모별 1년 내지 3년 이내 채굴권을 신청하여야 함 ✓ 대형 광산 : 3년 ✓ 중형 광산 : 2년 ✓ 소형 광산 : 1년 	

<p>주 관 부 서</p>	<p><u>국토자원부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역(내수), 여러 성자치구·직할시에 위치한 광산자원 - 외상투자 광산자원 개발 - 석유·알킬류 천연가스·메탄층 가스·방사성 광산 - 탐사면적 30 km² 이상의 석탄 광산 - 투자금액 RMB 500만 위안 이상 또는 탐사면적 15 km² 이상의 중석·주석·안티몬 광산 - 투자금액 RMB 500만 위안 이상의 유혈암·금·은·백금·망간·크롬·코발트·철·동·납·아연·알루미늄·니켈·몰리브덴·린·칼륨·스트론튬·니오브·탄탈 광산 - 이산화탄가스·지열·유황·금강석·석면·광천수 광산 <p><u>성급 국토자원부서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 국토자원부의 승인을 요하는 광산을 제외한 광산 또는 국토자원부의 수권에 받고 진행하는 광산 탐사권의 인허가 및 능기 	<p><u>국토자원부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여러 성·자치구·직할시에 위치한 광산자원 - 외상투자 광산자원 개발 - 석유·알킬류 천연가스·메탄층 가스·방사성 광산 - 대형 이상 석탄 유혈암 광산의 개발 - 중형 이상 중석·주석·안티몬 광산의 개발 - 대형 이상 금·은·백금·망간·크롬·코발트·철·동·납·아연·알루미늄·니켈·몰리브덴·린·칼륨·스트론튬·니오브·탄탈 광산 <p><u>성급 국토자원부서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산화탄가스·지열·유황·석면·광천수 광산 - 위 국토자원부의 승인을 요하는 광산을 제외한 중형 이상 광산 또는 국토자원부의 수권을 받고 진행하는 광산 채굴권의 인허가 및 능기 <p><u>현급 국토자원부서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 국토자원부 또는 성급 국토자원부서 의 승인을 요하는 광산을 제외한 기타 광산 채굴권의 인허가 및 능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광산규모 및 저장량 구분기준은 <고체광산자원/저장량 구분> (GB/T1776 6-1999) 적용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	---

<p>신청서류 / 승인인 기간</p>	<p><u>신청서류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능기서 및 광산구역 도면 - 탐사권 신청인의 자격증명서류 - 탐사업무 계획, 탐사계약 또는 위탁 탐사 관련 증명서류 - 탐사 시행방안 및 첨부서류 - 탐사 프로젝트 자금 출처 관련증명 - 기타 <p><u>승인 기간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 	<p><u>신청서류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능기서 및 광산구역 도면 - 채굴권 신청인의 자격증명서류 - 광산자원 개발이용 방안 - 광산기업 관련 비준증서 - 광산자원 개발 관련 환경영향평가보고서 - 기타 <p><u>승인 기간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 	<p>석유, 천연가스 관련 탐사권 또는 채굴권 신청 시 국무원으로부터 석유회사 설립 또는 석유 천연가스 탐사 또는 채굴 관련 비준서류를 사전 취득하여 국토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함</p>
<p>유효기간 및 유효기간의 연장</p>	<p><u>유효기간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반 탐사허가증의 유효기간: 최장 3년 - 석유, 천연가스 탐사허가증의 유효기간: 최장 7년 - 석유, 천연가스 형상탐사 관련 탐사허가증: 최장 15년 <p><u>유효기간의 연장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효기간 만기 전 30일 이내에 연장 신청 제출 - 매회 2년 이내로 연장 가능 	<p><u>유효기간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형 이상 광산의 채굴권증: 최장 30년 - 중형 광산의 채굴권증: 최장 20년 - 소형 광산의 채굴권증: 최장 10년 <p><u>유효기간의 연장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효기간 만기 전 30일 이내에 연장 신청 제출 - 최대 연장 기간에 관한 규정 없음 	
<p>탐사권 /</p>	<p><u>탐사권의 사용비용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첫번째 탐사연도로부터 세번째 탐사연도까지 매 km²당 RMB 	<p><u>채굴권의 사용비용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매 km²당 RMB 1,000 위안의 채굴권 사용비용 납부 	

<p>채굴권의 유지</p>	<p>100 위안 납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네번째 탐사연도로부터 매 km²당 매년 RMB 100 위안씩 추가하되 매 km²당 사용비용이 최고 RMB 500 위안을 초과 못함 <p><u>각 연도별 최저 탐사 투입비용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첫번째 탐사연도: 매 km²당 RMB 2000위안 - 두번째 탐사연도: 매 km²당 RMB 5000위안 - 세번째 탐사연도~ : 매 km²당 RMB 10,000위안 <p><u>탐사권의 유보 신청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탐사권 유효기간 이내 광산을 발견하는 경우 관련구역의 최저 탐사비용의 투입을 중단할 수 있고 탐사권 유효기간 만기도래 전 30일 이내에 탐사권의 유보신청을 제출할 수 있음 - 탐사권 유보 기간은 최장 2년이고 최대 2회 각 2년 연장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에서 출자하여 탐사한 광산구역에 대한 채굴권을 취득하는 경우 국토자원부와 국무원 자산관리부서에서 공동으로 평가하여 확인된 채굴권 가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<p><u>광산자원 보상비용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채굴권자는 광산 제품 판매소득에 대하여 아래 비율에 따라 보상비용을 납부하되 성급 국토자원부서와 성급 재정부서의 공동 승인을 받고 감면을 받을 수 있음. <p>✓ 광산자원 보상비용</p> <p>= 광산제품의 판매소득× 보상비율×채굴율 계수 (Ratio of Mining Recovery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상비용의 감면 요건 <p>✓ 보상비용의 면제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폐석으로부터 광산 제품 회수할 때 ② 이미 폐쇄되었고 별도의 보안조치 없이 방치되어 있는 광산으로부터 산존 광산을 채굴할 때 <p>✓ 보상비용의 감액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폐광산으로부터 	
----------------	---	---	--

		<p>광산제품을 회수할 때</p> <p>② 공업제품 표준에 미달하거나 저장량 표준에 미달하는 저품질 광산자원을 채굴할 때</p> <p>③ 물, 건축물, 교통 도로 밑에 축비된 광산자원을 채굴할 때</p> <p>④ 국가 지정 가격정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때</p>	
<p>변경 및 말소</p>	<p><u>탐사권의 변경등기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아래 사유 발생시 주관 국토자원부서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✓ 탐사구역 범위의 확대 또는 축소 ✓ 탐사 대상의 변경 ✓ 탐사권의 양도 ✓ 탐사권자의 명칭 또는 주소지 변경 <p><u>탐사권의 말소등기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아래 사유 발생 시 주관 국토자원부서에 말소등기를 하여야 함 ✓ 탐사권증 유효기간 만기도래 되었지만 연장 또는 유보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✓ 탐사권자가 채굴권을 신청할 때 ✓ 탐사 프로젝트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	<p><u>채굴권의 변경등기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아래 사유 발생 시 주관 국토자원부서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✓ 광산구역의 변경 ✓ 채굴 광산 종류의 변경 ✓ 채굴 방식의 변경 ✓ 광산기업의 명칭 변경 ✓ 채굴권의 양도 <p><u>채굴권의 말소등기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아래 사유 발생 시 주관 국토자원부서에 말소등기를 하여야 함 ✓ 채굴권증 유효기간이 만기도래 되어 광산개발 종료 ✓ 채굴권증 유효기간 이내 광산개발 중단 	

- 탐사권 / 채굴권의 양도시 주관 국토자원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다음과 같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.

구분	탐사권	채굴권
양도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탐사권증 취득일로부터 2년 경과 또는 탐사구역에서 채굴 또는 추가 탐사할 필요가 있는 광산을 발견 - 최저 탐사비용 투입 - 탐사권 분쟁이 없어야 함 - 탐사권 사용료 및 탐사권 가액 미납이 없어야 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업의 합병, 분립, JV, 자산 매각 및 기타 회사 재산권 양도로 인하여 채굴권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관 국토자원부서의 비준을 받고 양도 가능함 - 광산기업의 채굴 투입일로부터 1년 경과 - 채굴권 분쟁이 없어야 함 - 채굴권 사용료, 채굴권 가액, 광산자원보상료 및 자원세 미납이 없어야 함

■ 외상투자 광산개발 관련

구분	외상투자 광산자원(석유, 천연가스, CMB 제외) 탐사 / 채굴 기업의 설립	외상투자 석유, 천연가스 자원의 탐사 / 채굴
설립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외상투자 광산자원 탐사기업 - 상무부서 비준상 제한류에 편입된 광산자원 관련 탐사기업의 경우 상무부 승인 취득, 그 외 성급 상무부서 승인 취득 - 상무부서와 국토자원부서의 조율 ✓ 상무부서는 외상투자 광산자원 탐사기업 설립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동급 국토자원부서의 의견을 조율 ✓ 동급 국토자원부서의 동의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무원에서 비준한 대외합작 석유 자원 채굴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참여할 수 있고, 계약 상대방은 CNPC, SINOPEC와 같은 국유석유회사 이고 당해 석유자원계약은 상무부의 비준을 받아야 함 - 동 계약을 체결한 외국기업은 당해 석유자원에 대하여 단독 투자하여 탐사를 진행 - 상업가치가 있는 석유자원을 발견하는 경우 외국투자자와

	<p>받은 후 상무부서는 45일 이내 외상투자 광산자원 탐사기업의 설립 관련 비준 여부 결정하고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영업집조 취득 - 국토자원부서에서 탐사권증 취득 ✓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, 영업집조 등 서류를 국토자원부서에 제출하여 탐사권증 취득 <p><u>외상투자 광산자원 채굴기업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상투자 광산자원 탐사기업이 발견한 광산이 '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' 에 따라 자체적인 채굴이 가능한 경우 주관 국토자원부서에 채굴권증 신청 - 채굴권증 취득 후 주관 상무부서 및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경영범위 변경 	<p>중국측 석유회사가 공동 개발하고, 외국 투자자는 중국 국유석유회사가 석유자원계약상 약정한 제반 생산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할 능력을 구비할 때까지 개발업무 및 생산업무를 책임져야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국 투자자는 석유자원계약의 약정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석유 또는 별도로 구입한 석유를 국외로 이전하거나 투자 회수 금액, 이익 등을 국외로 반송할 수 있음 - 외국투자자가 중국 이내에서 판매하는 석유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SINOPEC에서 인수
<p>혜 택</p>	<p>광산자원 보상비용의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생, 반생자원의 회수 채굴 시 광산자원의 보상비용 반감 - 폐석광산 이용시 광산자원 보상비용 면제 - 중국 현재 보유기술로 개발하기 어려운 자원을 선진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 광산자원의 보상비용 3년 면제 	

	<p>- 기술적인 수단으로 Ratio of Revocacy, 광산전정 회수율과 종합이용율이 국내 동종 기업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광산자원 보상비용 3년 감면, 국내 동종 기업의 채굴수준을 초과한 부분의 광산 제품에 대하여는 광산자원 보상비용 면제</p> <p>서부지역 광산자원 탐사 / 채굴 투자</p> <p>- 탐사권 / 채굴권 사용료 1년 면제, 2년 반감</p> <p>-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」상 장려류에 편입되는 경우 광산자원 보상비용 5년 면제</p>	
--	--	--

■ 중국 자원 개발 관련 사례

- 중점 산업별 일반 사례

구분	석유화학산업	천연가스	석탄
<p>사 업 현 황</p>	<p>원유</p> <p>- 2010년 중국 원유 소비량은 4.37억톤, 수입 의존도는 53.5%로 2009년 대비 2.2%증가, 2015년에는 원유의 수입 의존도가 65%에</p>	<p>- “서부 가스를 동부로 운송”하는 전략과 “사천 가스를 동부로 운송”하는 전략의 정상적인 가동으로 현재 중국 천연가스 공급은 급속 발전 단계에 진입</p>	<p>석탄사업의 구조 조정</p> <p>- 2009년 초부터 산서성 석탄자원의 구조조정 실시, 2010년 초 기본적인 구도 완성</p> <p>- 2010년 도태된 석탄 생산량은 1.22억톤에 달하며 소규모 광산</p>

	<p>달할 것으로 전망 <u>정유 및 에틸렌 생산</u></p> <p>- 2010년 중국 정유량, 에틸렌 총생산량은 세계 제2위로 각 5.4억t/a, 1,520만t/a이고, 에틸렌의 대외 의존도는 처음으로 50% 이하로 감소</p>	<p>- 2000년 이전에는 중국 천연가스 소비가 화공 및 공업원료로 대거 사용되었지만 현재 도시화 진척에 따라 천연가스 소비구조가 도시천연가스 소비 위주의 다원화 방향으로 발전</p> <p>- 2010.5월에 공표된 <민간투자의 건강할 발전을 장려하고 인도할 것에 관한 일부 의견>에서는 민간투자가 석유사업과 천연가스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명시</p> <p>- 향후 타리무, 섬서, 감숙, 영하, 사천, 청해, 난해북부 등 5대 천연가스 기지를 중심으로 투자력을 높인 것으로 전망</p> <p>- 2015년 중국 천연가스 수요량이 현재 2배인 2,000억m³에 달해 세계 제2대 천연가스 소비국으로 될 전망</p>	<p>1,259개를 폐쇄하였음</p> <p>- 2010년 중국 석탄 생산량은 32.5억톤으로 2009년 대비 8.2% 증가되었고 석탄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추세임</p> <p><u>Outgoing 전략 가속화</u></p> <p>- 中聯CMB 회사를 제외하고 CNOOC, SINOPE, 하남 CMB 회사도 CMB 관련 대외합작권을 취득</p> <p>- CMB산업기술창신전략연맹 (2010.12) 설립하여 CMB 개발능력 제고</p>
--	---	---	--

<p>사 례</p>	<p><u>원유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CNOOC와 러시아 Rosneft 간에 <유전 탐사개발을 확대하는 것에 관한 합작 비방록>(2010.11) 체결 - CNOOC 미화 70억 달러로 BP가 보유하고 있는 Pan American Energy 지분 60% 인수(2010.11) - 중국과 러시아 간의 원유 파이프 구축 준공 완료, 매년 동 파이프를 통하여 러시아로부터 1,500만톤의 원유를 공급받을 수 있고 공급기간은 20년으로 약정(2010.9) <p><u>정유 및 에틸렌 생산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러동방석화(천진) 유한공사 1,300만톤 정유 프로젝트 개동(CNPC 51% 지분 보유)(2010.9) - 중사(천진)화학공사 (SINOPEC과 사우디 	<p><u>천연가스 E&P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CNPC와 Chevron의 사천 동북 천연가스 합작 프로젝트 개동(2010/8) (중국 내륙 최대 천연가스 합작 프로젝트) <p><u>파이프 저장 및 운수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SINOPEC: 사천가스 동부 운송 프로젝트 전면 가동, 연 운송량 120억 m³ (2010.3) - CNPC: Chang Qing 유전에 중국 최대 가스저장고 설립 예정 (2010.4) - CNPC: 서부 가스 동부 운송 프로젝트의 두번째 라인이 구축되고 있고 세번째 및 네번째 라인도 이미 기획되고 있음 <p><u>LNG 터미널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CNPC: 대련 LNG(액화 천연가스) 프로젝트 준공(2010.8) - SINOPEC: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 청도 개시 (2010.9) 	<p><u>신형 석탄화공업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CIL: Xinhua 직접액화 CIL 프로젝트(100만t/a), 내몽고Yitai 간접액화 CIL 프로젝트(16만t/a) 정상 운영 - SNG: 내몽고 Huineng SNG 프로젝트(20억 m³/a) 2010.4월 개동, Datangbuxin SNG 프로젝트(40억 m³/a), Datangchifeng SNG 프로젝트(40억 m³/a) 2013년 개동 예정 - MTO: Xinhua 싸우터우 MTO 프로젝트 (60만t/a) 2010.5.31.개동, Datangduolun MTP 프로젝트(46만t/a) 2010년 제3분기 전면 시범 생산, Shenhua Ningmei 그룹 MTP 프로젝트(52만t/a) 2010년 5월 시범 시행 <p><u>Outgoing 프로젝트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CNOOC: 3.3억을 투자하여 호주 CMB 탐사권 취득
----------------	---	--	--

	SABIC 공동 투자) 백만톤 급 에틸렌 생산 개동(2010.1)(SINOPEC 50% 지분 보유)	(Exxon Mobile로부터 자원을 공급받음) - CNOOC: 광동 주해시에서 LNG 공정 개동(2010.10), 향후 중국 연해에 9개 LNG 터미널 건설 예정 기타 - China Gas가 21억 위안으로 中裕燃气 인수, 현재 도시가스 프로젝트 136개 달함(2010.3)	(2010.12) - CNPC: Shell과 합작하여 35억 호주 달러로 호주 Arrow 회사 인수(2010.8)
--	--	---	--

■ 유의 사항

- 광산자원의 개발은 그 탐사시점으로부터 실제 채굴에 이르기까지 일반적
으로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외국투자자들의 중국 광산자원 개발은 채
굴권을 취득한 중국 내 기업에 대한 지분인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
- 따라서, 이와 같은 지분인수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으로 체크하여
야 하는 부분은 채굴권이 유효한 법적효력을 가지는 지 여부임. 즉, 채굴
권의 적법한 등기여부, 채굴권의 유효기간, 채굴허가 지역범위, 채굴권의 사
용비용과 보상비용의 적법 납부 여부 내지 채굴권의 명의자와 실질지배인
의 일치여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
- 한편, 광산기업은 대부분 산업안전의 이슈가 존재하므로 지분인수 전 실
사를 통하여 산업안전 배상비용과 같은 우발채무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
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
- 마지막으로, 중국 광산자원 투자에서 지역 정부와의 대관 업무 내지 해당

지역의 불류업체, 공공서비스 업체, 광산기업의 상류업체 및 하류업체와의 성공적인 제휴관계를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시되어야 할 것임

12.5계획은 경제발전, 과학기술교육, 인구자원환경, 자원환경과 인민생활 총 4분류, 24개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는데, 24개 항목의 지표 중 12가지 구속성 지표와 12가지 예기성지표로 이루어지고, 그 중 경제발전의 지표는 모두 예기성지표인데비하여자원환경의 8가지표 중 7개는 구속성 지표로 확정되었음. 예기성지표란“국가가 바라는 목표”이며 구속성 지표란 “국가가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목표”임.